

규정 코드	A02(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최종 제.개정일
규정 명칭	공인 지도자의 자격취득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3. 26 개정 2013. 4. 01 개정 2015. 3. 21 개정

A02 공인 지도자의 자격취득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 오리엔티어링 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 오리엔티어링의 올바른 보급 발전을 위해 교육 관련 및 오리엔티어링 공인 지도자 자격취득 및 전문지도자의 자격취득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용어(교육과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육’이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연맹 및 관련기관 등이 모든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육성과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실행하는 과정의 교육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공인지도자’라 함은 중앙연맹이나 시도 연맹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보수교육 등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3. ‘지도자 인정’이라 함은 지도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본 규정에 의하여 오리엔티어링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 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외국에서 오리엔티어링 관련 연수를 마쳤거나, 오리엔티어링 보급과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하여 지도자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4. ‘종목지도자’라 함은 Foot, MTB, Ski, Trail 종목 3급 과정 이수자로서 등록한 자에게 부여한다(기존의 지도자는 Foot 0지도자로 함).
5. ‘전문지도자’라 함은 2급 이상의 지도자가 과정상의 내용을 각각 수행한 후 주어지는 전문 과정 지도자이다.
6. ‘종목 추가 취득’ ‘수평 등급’ 종목지도자가 타 종목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3급만 타 종목 추가 이수가 가능(수평 등급 이수)하며, 기존 Foot 지도자 1, 2급 소지자가 타 종목 1, 2급 자격으로의 수평이동 이수는 금지한다.
7. ‘대회 감독관(컨트롤러)’이라 함은 각 종목별 전문지도자의 과정을 모두 수행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부여한다. 국내의 모든 공식 대회에 파견되어 대회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지도자의 종목별 구분)

1. 종목지도자 구분(기본)

Foot, MTB, Ski, Trail 지도자로 구분 한다. 각 종목의 등급은 1급, 2급, 3급 지도자가 있다(이하 '<종목 명칭>지도자' 표기).

2. 인재 양성에 의한 구분

- ① '전문지도자'는 종목별 2급 이상의 지도자가 해당 종목에 구체적인 전문지도자의 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 ② '국내 컨트롤러'는 종목별 전문지도자 과정을 마친 자로서 컨트롤러 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 ③ '심판관 제도(임명)'는 과정에 참여하여 각 등급별 수행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지도제작 지도자'는 지도 제작의 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단 과정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제작 과정 수행자'라 한다.

제4조 (지도자의 의무)

지도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지도자는 본 연맹 또는 각 시.도 연맹의 회원이 된다.
2. 지도자는 본 연맹 또는 각 시.도 연맹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회, 강사, 연수회 등 사업에 참가, 협력하는 동시에 오리엔티어링 클럽의 육성, 지도 등 보급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연맹 주최 또는 공인 사업에는 지도자가 가능한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식, 비공식 관련 체육행사에 종목, 전문지도자(해당 명칭 사용)로 파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자의 권리)

지도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 및 각국 오리엔티어링연맹 등이 개최하는 국제적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 본 연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본 연맹 및 각 시.도 연맹의 추천을 받아 임원 및 각종 오리엔티어링 대회, 강습회, 연수회 등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3. 본 연맹 또는 각 시.도 연맹으로 부터 오리엔티어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 2 장 강사 및 외부 심사위원 파견

제6조 (강사의 구분)

강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상 구분

- ① 책임강사: 2급 종목별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유지, 연차 등록하고 있는 강사
- ② 강사(보): 3급 종목별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유지, 연차 등록하고 있는 강사
- ③ 초빙강사 - 지도자과정의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 초빙 강사

2. 과목별 강사의 구분

종목지도자별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 이론강사: 2급 종목별 지도자 이상의 이론 강의 책임 강사
- ② 실기강사: 3급 종목별 지도자 이상의 실기 책임 강사
- ③ 초빙강사: 지도자 과정의 운영상 과목에 맞는 외부 초빙 강사

제7조 (강사의 적용과 자격)

강사의 적용과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강사는 모든 과정마다 종목별 2급 또는 3급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책임강사 1명을 필히 임명하며 필요한 인원의 강사(보)를 구성한다.
2. 지정교육단체에서는 위 각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내부적으로 인선 또는 외부에 위촉(초빙 강사)하여 본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국가기관(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연수원급) 등 유관 기관에서 오리엔티어링 자격 취득에 관한 ‘심사위원 파견’에 관하여도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관련 기관 공지 자격 부여 내용의 1계단 상급의 자격자 이상에게 주어져야 한다.
 - ② 아래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자격으로서 가장 근접한 지방의 최상위 지도자>국내 컨트롤러>1급 지도자>전문지도자>2급 지도자>전문지도자>종목지도자 순으로 한다.

해당자가 없다면 차 순위 자로 하며 상위 지도자 진행과정자로 한다.

제 3 장 종목 지도자

제8조 (종목 지도자 과정 시행자)

지도자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자(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 1급, 2급 종목지도자 과정, 2급 보수 교육, 종목지도자과정, 전문지도자과정, 지도제작지도자과정, 국내 컨트롤러과정, 인재 양성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로 하는 보수, 교육 등의 과정.

단 시.도 연맹에서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종 지도자과정은 본 연맹에서 일괄 한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시.도 연맹: 3급 종목지도자 과정, 3급 종목지도자 보수 교육

단 시.도 연맹에서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종 지도자과정은 본 연맹에서 일괄 한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지정교육단체: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3급 종목지도자 과정만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종목 지도자 과정 실시 방법)

지도자 과정 실시는 각 시행자의 형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종목지도자 과정 및 보수 교육은 종목 명칭별(Foot, MTB, Ski, Trail O) 규정에 따른 상세 일정, 과정 내용, 참가비 등을 공고 후 실시한다.
2. 종목별지도자 과정은 각 연맹별 교육, 과정별로 중복되지 않게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과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종목 지도자 수강자의 자격)

종목 지도자 과정의 수강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종목별 3급 지도자 과정(그 동안 시행해 온 지도자 제도 과정 명칭 변경)

- ① 종목별 오리엔티어링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대상(초보자)
 - ② 고교이하의 학생도 참가가 가능하나 수료증만 교부함.
2. 종목별 2급 지도자 과정
-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각 시·도 연맹이 추천한 자(2013년부터 해당 연차 등록 필한 자)나 개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한 자.
- ① 종목별 3급 지도자 등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으며 현재 3년 이상인 자.
 - ② 3급 등록 후 오리엔티어링 관련 활동(현지조사와 제도 경험, 지도제작 실적, 코스설정 경험과 대회 운영 실적, 강사, 대회참가 실적, 인재 양성 교육 과정 참가 등)에 참여한 실적이 3종 이상 참여자.
 - ③ 3급 등록 후 아래의 오리엔티어링 관련 활동 실적이 2종 이상인 자
 - 현지조사 참여 3회
 - 지도제작 실적 1회
 - 코스설정 실적 1회
 - 대회참가 실적 6회
 - 지도자 강사 활동 10회
 - 인재양성과정 수강 2회(중앙연맹 주최 과정에 한함)
3. 종목별 1급 지도자 과정
- 각 지역 연맹의 2급 지도자 자격 유지자로 추천한 자(2013년부터 해당 연차등록자)이며,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종목별 2급 지도자 등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② 지도제작 부분에 참가(조사, 제도, 제작 포함)한 실적, 코스설정 실적, 대회운영실적, 대회 참가 실적이 각 2회 이상이거나 강사 수행 자.
 - ③ 지도제작지도자(또는 과정수행자, 종목지도자과정(4개 종목별), 전문지도자과정 등에 3종 이상을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강사 수행 자.

제11조 (종목별 지도자 과정별 과목과 이수교육 시간)

각 지도자과정의 과목과 교육이수시간은 아래와 같다.

- 1. 종목별 3급 지도자 과정 과목과 시간
- 각 시·도 연맹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① Foot O 3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개론	60분	Foot O 코스설정법	60분
나침반 기초와 응용	60분	컨트롤위치설명표 작성법	60분
ISOM(O-Map) 읽기(이해)	60분	Foot O 대회 운영	60분
Foot O 코스공격법	60분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60분
실기, 경기(경기 외 경기장에서의 보조 교육 포함)			600분 (3회성적)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MTB O 3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개론	60분	ISMTBOM 읽기(이해)	60분
나침반 기초와 응용	60분	MTB O 코스공격법, 설명표 이해	60분
MTB O 코스설정법	60분	MTB 기술(이론)	60분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60분	MTB O 대회 운영	60분
실기, 경기(경기 외 경기장에서의 보조 교육 포함)			600분 (3회성적)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Ski O 3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개론	60분	ISSkiOM 읽기(이해)	60분
나침반 기초와 응용	60분	Ski O 코스공격법, 설명표 이해	60분
Ski O 코스설정법	60분	Ski 기술(이론)	60분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60분	Ski O 대회 운영	60분
실기, 경기(경기 외 경기장에서의 보조 교육 포함)			600분 (3회성적)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Trail O 3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개론	60분	ISSOM 읽기(이해)	60분
나침반 기초와 응용	60분	Trail O 코스공격법	60분
Trail O 코스설정법	60분	컨트롤위치설명표 작성법	60분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60분	Trail O 대회 운영	60분
실기, 경기(경기 외 경기장에서의 보조 교육 포함)			600분 (3회성적)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종목별 2급 지도자 과정 과목과 시간

① Foot O 2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동향	60분	Foot O 코스설정법	120분
Foot O 경기규정(주요 사항)	60분	Foot O 트레이닝 기법	120분
KOF 규정	60분	MTB, Ski, Trail O 이해	120분
ISOM(지도제작 규정) 이해	60분	컨트롤위치설명표 이해, 작성	120분
제도의 이해	60분	Foot O 대회운영(이론/Detail)	240분
오리엔티어링 실기, 경기	240분	IT, 도핑 등 기술적 이해	120분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MTB O 2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동향	60분	MTB O 코스설정법	120분
MTB O 경기규정(주요 사항)	60분	MTB O 트레이닝 기법	120분
KOF 규정	60분	Foot, Ski, Trail O 이해	120분
ISMTBOM(지도제작 규정) 이해	60분	MTB O 대회운영(Detail)	180분
제도의 이해	60분	MTB O 기능, 실기, 경기	240분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Ski O 2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동향	60분	Ski O 코스설정법	120분
Ski O 경기규정(주요 사항)	60분	Ski O 트레이닝 기법	120분
KOF 규정	60분	Foot, MTB, Trail O 이해	120분
ISSkiOM(지도제작 규정) 이해	60분	Ski O 대회운영(Detail)	180분
제도의 이해	60분	Ski O 기능, 실기, 경기	240분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Trail O 2급 지도자 이론, 실기 과목

오리엔티어링 동향	60분	Trail O 코스설정법 Solution 작성법	120분
Trail O 경기규정(주요 사항)	60분	Trail O 경기 방법	120분
KOF 규정	60분	Foot, MTB, Ski O 이해	120분
ISSOM(지도제작 규정) 이해 시간측정용 지도 이해, 제작법	120분	Trail O 대회운영(Detail)	180분
컨트롤위치설명표의 이해	60분	Trail O 실기, 경기	240분
단 필요로 하는 과목(또는 내용)은 상황(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종목별 1급 지도자 과정 이수

- ① 기본 교육 - 종목별 최소 10~20시간의 별도의 과정을 준비한다.
- ② 종목별 1급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을 100%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종목별 추가 취득 규정)

종목별 지도자로서 타 종목의 종목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종목별 3급 공동 면제 과목

1개의 종목에 참가한 지도자가 추가로 타 종목 추가 시 '오리엔티어링 개론' '나침반 기초와 응용' '컨트롤위치설명표(작성법)'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과목만을 면제한다.
단 MTB나 Ski O 지도자는 컨트롤위치설명표(작성법)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종목별 1, 2급 지도자 추가 취득 과정

- ① 종목별 3급 과정의 이론, 실기, 경기 시간 및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종목별 1, 2급 소지자의 경우는 각 종목별 수평 이수 추가 취득(타 종목 1, 2급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종목별 보수 교육의 과정)

보수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종목별 3급 지도자 보수 과정
 - ① 이론 240~360분 이론적 과정을 갖는다.
 - ② 실기 300분의 시간을 갖는다.
 - ③ 기본 과목으로 최근 동향, 규정에 관한 내용(변경사항), 향 후 전망 등을 다루어야 한다.
 - ④ 기타 내용은 강사진이 운영을 기획하여 준비한다.
2. 종목별 2급 지도자 보수 과정
 - ① 이론 240~360분 이론적 과정을 갖는다.
 - ② 실기 300분의 시간을 갖는다.
 - ③ 기본 과목으로 최근 동향, 규정에 관한 내용(변경사항), 기술적 부분, 트레이닝 기법, 실기 등을 다루어야 한다.
 - ④ 기타 내용은 강사진이 운영을 기획하여 준비한다.

제 4 장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

제14조 (전문지도자 육성 목적)

1. 오리엔티어링대회와 추진, 운영 방법을 통일하며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하여 오리엔티어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2. 국내의 기초를 토대로 국제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국제스포츠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5조 (전문지도자의 자격)

전문 지도자의 배출 목적에 따라 정하되 필히 아래의 이수 요건은 갖춘다.

1. 4개 종목지도자로서 2급(이상)을 수료하고 각 시.도 연맹의 추천으로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Foot, MTB O, Ski O, Trail O 연차 등록으로 유지지도자이어야 한다.

제16조 (전문지도자의 이수 조건과 과정)

1. 기본 교육
 - ① 과목은 각 종목의 기본사항, 기본 기술, 실기, 시험(기본 평가) 등으로 구분 한다.
 - ② 이론 200~360분, 실기 240~360분을 기본으로 한다.
 - ③ 2급 과정에 통합하거나 별도로 실시한 수 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목, 실기 시간은 조정 가감할 수 있다.
2. Foot O 종목 전문지도자 수행 과정

시.도 연맹배 대회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대회(행사), 종목지도자과정, 교육 준비나 강사로 참여했거나 별도의 인정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하여 '별지 제60호 서식' 제출(대회장 날인) 시 인정한다.

① 출발운영 참여 실적 5회(소속연맹 3회, 타 연맹 2회/조정 가능).

② 패트를 실행 실적 5회(소속연맹 3회, 타 연맹 2회/조정 가능).

③ 코스설정 실적 5회(소속연맹).

④ 도착운영 실적 5회(소속연맹 3회, 타 연맹 2회).

⑤ 전자편칭시스템 운영(또는 IT) 실적 5회.

⑥ 지도 제작 실적 조사와 제도 각 3회(중급 지도제작과정 수행자).

단 지도제작과정자로서 해당 단계의 이상의 자나 지도제작자는 면제한다.

⑦ 항목별 관리 시트로 관리(별지 제67호 서식 참조)

3. Ski, MTB O 종목 전문지도자 수행 과정

시.도 연맹배 대회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대회(행사), 종목지도자과정, 연수 준비나 강사로 참여했거나 별도의 인정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하여 '별지 제60호 서식' 제출(대회장 날인) 시 인정한다.

① 출발운영 참여 실적 5회

② 패트를 실행 실적 5회

③ 코스설정 실적 5회

④ 도착운영 실적 5회

⑤ 전자편칭시스템 운영 실적 5회

⑥ 지도 제작 실적 조사와 제도 각 3회(중급 지도제작과정 수행자/종목 지도 2회 필수). 단 지도제작과정자로서 해당 단계의 이상의 자나 지도제작자는 면제한다.

⑦ 항목별 관리 시트 관리(별지 제67호 서식 참조)

4. Trail O 종목은 전문지도자 수행 과정

시.도 연맹배 대회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대회(행사), 종목지도자과정, 연수 준비나 강사로 참여했거나 별도의 인정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하여 '별지 제60호 서식' 제출(대회장 날인) 시 인정한다.

① 출발운영 참여 실적 5회.

② 패트를 실행 실적 5회.

③ 코스설정 실적 5회.

④ 도착운영 실적 5회.

⑤ 시간측정컨트롤 운영 실적 5회.

⑥ 지도 제작 실적 조사와 제도 각 3회(지도제작지도자 달성 인정).

⑦ 항목별 관리 시트 관리(별지 제67호 서식 참조).

5. 종목에 따라 항목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상호 보완,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

②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

③ 기수별 부족한 이수는 다음 기수에서 보완하는 방법 또는 보강 시간 운영

6. 해당 각 호 과정을 100% 달성한 시점에 최종 인정 시험(실기 평가)으로 평가 한다.

7. 보수 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5 장 지도제작 지도자 양성

제17조 (지도제작지도자 육성 목적)

1. 오리엔티어링 지도 품질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대회 및 행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2. 오리엔티어링 지도 품질을 높여 대회의 질과 전체적 오리엔티어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3. 공인 오리엔티어링 지도 제작, 제공의 지향을 우선한다.

제18조 (지도제작지도자의 자격과 구분)

1. 3급 이상의 지도자로 하며 자격(연차 등록)을 유지한 희망자로서 각 시·도 연맹의 추천으로 한다.
2. 필요로 하는 기본 과정 참여와 인정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행한 증거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도제작 지도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초급(지도제작 과정수행자) : 전문지도자과정 참가와 현지조사 과정 중인 자.
 - 중급(지도제작 과정수행자) : 초급의 과정을 거치고 중급 과정의 진행자.
 - (상급)지도제작지도자 : 최종 완성도를 제출한 자(대회 사용 지도 형태).

제19조 (지도제작지도자의 이수 조건과 과정)

1. 지도제작 부분의 현지조사, 제도, 완성도, 연수 등을 세분하여 평가 한다.
2. OCAD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방법 적용도 가능하다.
3. 대회용, 교육목적용, 개인용 수행도 자료(제출)로 인정한다(별지 제60호 서식). 단 코스 설정은 7개 이상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3.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정 평가 한다.
 - ① 지도제작 전문 기본 과정
 - 교육시간 24시간중 이론 8시간, 실기 9시간, OCAD 8시간 이상 실시한다.
 - 년 1회 이상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 ② 초급(지도제작 과정 수행자): 현지조사 실적 5회
 - A4의 3/2이상 크기 완성 지도가 가능한 면적의 지역(축척 1:5,000 이상)
 - 횡수는 공원과 산야로 1/2 정도씩 이어야 한다.
 - ③ 중급(지도제작 과정수행자): 제도 실적 5회(최신의 규정을 적용 원칙)
 - ISOM 적용 3편
 - ISSOM 적용 2편
 - ISMTBOM 적용 1편(가상 제도 인정)
 - ISSkiOM 적용 1편(가상 제도 인정)
 - ④ 중급(지도제작 과정수행자): 코스설정 실적 5회
 - ISOM 적용 3편(최소 대회의 성격인 실제 지도)
 - ISSOM 적용 2편(최소 대회의 성격인 실제 지도)
 - Trail O 적용 1편(최소 대회의 성격인 실제 지도)
 - ISMTBOM 적용 1편(가상 인정)
 - ISSkiOM 적용 1편(가상 인정)
 - ⑤ (상급)지도제작지도자 : 완성도의 제출(코스 포함되어야 함)
 - 필요로 하는 오리엔티어링 지도의 구성(표기)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축척과 등고선 간격, 자북선, 지도제작규정 적용 내용, 제작자명, 컨트롤 위치설명표, 코스는 대회형, 연수형 등 지도제작 규정에 준하는 내용)

- ISOM, ISSOM 완성도 각 1편
- ISOM, ISSOM, Trail O 코스설정 각 1편

4. 평가 방법

- ① 교육연수 8시간후
 - ② 최종 인정 시험으로 평가 한다.
5. 보수 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0조 (지도제작지도자의 역할)

1. 공인대회의 오리엔티어링 지도의 제작, 제공, 교육, 조언할 수 있다.
2. 오리엔티어링 지도를 절차에 따라 연맹(전국)에 제공할 수 있다.
3. 본 연맹 교육에 관련한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6 장 대회 감독관(컨트롤러) 양성

제21조 (국내 대회 감독관(컨트롤러) 양성의 목적)

1. 종목별 전문지도자 과정을 마친 자에게 관리, 감독 기능을 주어 내부적으로는 대회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2. 본 연맹의 규정에 의한 '대회 감독관(컨트롤러)' 임무가 주어지며 국제오리엔티어링 연맹(IOF)의 기구에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제22조 (대회 감독관의 자격)

1. 종목별 전문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과정과 자격심사를 거친 자에게 부여한다.
2. 중앙연맹의 추천에 의해 IOF 이벤트 어시스턴트 이상의 자격을 득한 자는 자동적으로 대회 감독관으로 인정된다.
3. 위 항목(1.2)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제23조 (대회 감독관(컨트롤러)의 임무 및 권한)

1. 종목별 공인 대회의 감독관 기능을 수행 한다.
2. 대회 준비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모든 부분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는 지 관리, 감독한다.
3. 공인 대회에 임명된 대회 감독관은 대회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KOF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연맹, 시.도연맹의 종목별 교육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5. 대회 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대회 주최자가 지불한다.
7. 국내 컨트롤러 임무를 수행하여 5년이 경과 하였거나 5개 이상의 관리 수행이 되면 특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8.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의 임원으로 공식 추천할 수 있으며 기타 대내외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24조 (국내 대회 감독관(컨트롤러)의 자격 취소)

다음 사항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대회 감독관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회 감독관으로서의 일탈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 행위가 있을 때
2. 제23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대회 실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때
3. 기타 연맹의 정책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제 7 장 심판관 제도

제25조 (심판관 제도의 목적)

오리엔티어링대회의 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자 시행한다.

제26조 (심판관의 자격과 구분)

1. 종목별 3급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종목별지도자 또는 전문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각 연맹의 추천으로 하며 '심판자격 인정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심판관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 ① 종목별(Foot, MTB, Ski, Trail O) 심판위원(관)으로 나눈다.
 - ② 3급 심판: 보조심판(관)
 - 종목별로 3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심판 교육' 이수한 자
 - 종목별 종목지도자,
 - ③ 2급 심판: 주 심판(관)
 - 3급 심판 2년 차 이상 활동한 자(심판)
 -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심판 교육' 이수한 자,
 - 전문지도자(수행 포함)로서 심판 교육 이수한 자
 - ④ 1급 심판: 심판위원장 자격 부여
 - 1, 2급 지도자로서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자
 - '인재 양성에 관한 교육 과정' 다수 이수자(추천/우선권).
 - 1급 심판 교육을 이수한 자

제27조 (심판관의 자격 이수 조건)

1. 기본 과목은 심판관의 역할, 각 종목의 경기규정, 종목별 심판 규정, 이의 신청에 대
처리, 결과(보고) 등으로 구분 한다.
이론과 실기 360~600분을 기본으로 한다.
2. 심판관의 보수 교육은 1~2년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년 2년간 대회 심판을 5회 이상 한 자는 보수교육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심판관의 역할)

1. 공인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 심판위원회의 심판 배정에 동의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대회에서의 심판(관)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보조심판 약간 명 : 운영 스텝으로 참가한 심판(보)
 - ② 심판위원 2명 : 판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 행정 및 운영 부분과 현장(경기
장)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심판위원장 1명 : 심판업무의 총괄, 최종 판정(이의 제기, 공안 관련 부분)하는 업
무 관장

제 8 장 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

제29조 (자격 검정 시험 대상)

각 지도자는 자격 검정 시험에 응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1. 각 지도자 또는 인재 양성에 관한 교육 등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론, 실기 성적'을 반영 한다.
2. 타 기관의 유사한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한 자에게도 해당된다.
단 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 시험(테스트)을 별도로 실시한다.

제30조 (자격 검정 시험 표준)

각 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과정 필기 및 실기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과정별로 균등한 내용을 출제한 30문항 이상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② 과정별로 실기 3회 이상의 기록을 반영 한다.
 - ③ 각 지도자 과정별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한다.
2. 이수에 필요한 취득 점수는 공히 아래와 같다(100점 만점 기준).
 - ① 3급 종목지도자 과정: 70점.
 - ② 2급 종목지도자 과정, 전문지도자, 지도제작지도자 : 80점.
 - ③ 심판관: 3급 - 70점, 2, 1급 - 80점
 - ④ 컨트롤러: 80점

제31조 (자격 검정 시험 관리 감독)

각 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 감독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 각 시도 연맹이 출제, 시행, 관리 감독한다.
2. 지정교육단체의 경우는 중앙이나 위촉한 시도 연맹에서 출제, 시행, 관리 감독한다.

제 9 장 지도자 과정의 종료와 등록 및 비용

제32조 (지도자 과정의 종료)

지도자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했을 때 종료로 본다.

1. 과정을 모두 수행한 시점
2.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으로 분류된 시점.
3. 합격자의 수료증 발부와 후속 처리 안내 시점.
4. 본 연맹에 지도자 과정의 결과 보고(필기, 실기 검정시험 결과 첨부)와 희망자의 지도자 등록을 일괄 신청한 시점.

제33조 (지도자 등록과 취소, 유효 기간)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도자 등록 및 취소할 수 있다.

1. 지도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 등록비를 납부하고 본 연맹에 신청해야 하며 지도자 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지도자 등록이 완료된다.
2. 부득이한 경우 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3. 보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변경된 증으로 교부한다.
4. 지도자 자격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종목지도자, 전문지도자, 지도제작지도자, 국내 컨트롤러, 심판관은 발행일 기준 3년으로 한다.
 - ② 1급은 유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보수 교육의 목적으로 유효 기간을 산정할 때는 그 해당 연도의 자 모두를 포함(만료의 해 1년 범위)한다.
 - ③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은 정지가 되며 보수교육을 받은 익일부터 자격을 갱신 할 수 있다.
 - ③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급된 자격증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지도자의 연차 등록을 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금액은 본 규정 제37조에 명시).

제34조 (지도자 과정 증빙의 교부)

지도자 과정은 수료증과 공인지도자증(또는 증서)을 교부한다.

1.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행처에서 수료증을 일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략할 수도 있다.
2. 본 규정 제33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지도자증을 교부한다.
3. 보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변경된 증으로 교부한다.
4. 지도자 자격증 교부는 아래와 같다.
 - ① 기본 1급 지도자-적색 2급 지도자-청색 3급 지도자-녹색
색상구분은 플라스틱 발행 경우 위와 같으며 종이로 발행할 때는 색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② 증 전, 후면에 '종목'을 표시 한다.
 - ③ 종목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인정서는 반드시 해당 지도자의 명칭을 기입 한다.
 - ④ 종목 지도자, 전문지도자, 컨트롤러, 지도제작지도자 기본 교육 과정은 수료증(자격증)을 자격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증서(종이가 기본)를 교부한다.
5. 기타 필요로 하는 관련 증빙을 시행처(본 연맹, 시.도 연맹)에서 교부한다.

제35조 (지도자 신청 구비서류)

과정을 수행한 기관에서 아래의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교육실시보고서'(일정, 과목, 강사, 장소, 시간 표시)
2. '별지 제41호 서식' 기재 제출.
단 보수과정, 타 종목별 추가 취득, 전문지도자, 심판과정 신청 시는 규정의 자격요건에 맞는 증빙(자격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Jpg파일(300dpi). 단 후면 배경이 없어야 함.
4. 등록비(개인, 신청자 일괄)

제36조 (지도자 자격의 상실)

본 연맹 및 시도 각 연맹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1.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
2. 지도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

3. 제33조 2항에 의거 본인이 지도자 등록을 취하한 경우.
4.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자의 의무에 대한 태만.
5. 유효일자가 도래 하였음에도 보수 교육을 필하지 않은 자

제37조 (교육 과정 수행의 비용)

교육과정별 수강료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 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 단위로 변경(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도자 과정 교육 수강료

전국 시.도 연맹이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단 교재 및 등록비는 별도로 명시한다.

- ① 1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300,000원
- ② 2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50,000원, (보수) 70,000원
- ③ 3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00,000원, (보수) 70,000원
- ④ 종목별 특성에 따라 장비 대여, 교육 환경과 장소(거리), 숙박, 기능 상 등의 요인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다.

2. 인재 육성(전문지도자, 지도제작자, 컨트롤러, 심판관 등)을 위한 교육 참가비

- ① 장소, 기간, 강사섭외, 장비 사용 등의 비용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 ② 진행 과정 상에 투입되는 비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과정 해당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최초등록 및 보수 교육자

- ① 종목 1급 지도자 등록비 -----100,000원
- ② 종목 2급 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 ③ 종목 3급, 보수, 지도자 등록, 재발급비 - 30,000원
- ④ 전문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 ⑤ 국내 컨트롤러 등록비 ----- 50,000원

4. 지도자 연차등록비 : 10,000원(본 연맹과 시.도 연맹 각 5,000원씩 분배 개념) 최초 등록(자)의 경우는 면제하며 시.도 연맹을 거쳐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수 교육은 최초등록자의 자격에서 제외한다.

5. 강사비는 시행처의 자율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 10 장 부 칙

제38조 (경과규정)

아래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둔다.

1.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시.도 연맹이 결성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당분간 본 연맹이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연맹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규정에 관계없이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제39조 (발효)

이 규정은 2005년 3월 26일부터 개정하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